

#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춘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54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월 30일

발 의 자 : 김춘례, 신원철 의원(2명)

찬 성 자 : 강동길, 안광석, 황규복,  
박기재, 김생환, 홍성룡,  
송아량, 최정순, 이상훈 의원(9명)

## 1. 제안이유

- 월드컵, 올림픽 등 국내·외 스포츠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임.
- 우수 선수 양성을 위해 학교운동부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동종목의 경우 훈련 및 연습을 위한 체육시설이 한정되어 있고 높은 사용료로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바, 학교운동부 선수의 체육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엘리트 체육선수 기반 강화를 위해 시립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를 50% 감액하여 엘리트 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- 한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 및 참여를 독려하고 인식제고 및 차상위계층의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체육시설 사용료 감액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200시간 이상의 자원활동봉사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개인연습사용료 및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를 100분의 30을 감액하도록 함(안 제10조제1호·제2호)
- 관내 초·중·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의 경우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하도록 함(안 제10조제4호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 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 
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다. 기타사항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에 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바목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는 100분의 30 감액

같은 조 제2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는 100분의 30을 감액한다.

같은 조 제4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관내 초·중·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의 경우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 감액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별표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</p> <p>가. ~ 나. (생략)</p> <p>다. <u>10명 이상의 단체입장 이용자 : 100분의 30 감액. 다만, 수영장 또는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라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2. 별표2 제2호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.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.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라. <u>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잠실 제1·2수영장 및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수강료의 100분의 10</u></p>	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/p> <p>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「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</u>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는 <u>100분의 30 감액</u></p> <p>라. (현행 다목과 같음)</p> <p><u>마.</u> (현행 라목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「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</u>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활</p>

을 감액한다.

마. (생략)

<신 설>

3. (생략)

4.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 감액

가.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·행사

나. 민속제나 고유 민속문화의 보급·발전을 위한 행사

다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·행사

라. 65세 이상의 노인, 12세 이하의 어린이, 장애인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·행사

마. 그 밖에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·행사

<신 설>

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는 100분의 30 감액

마. (현행 라목과 같음)

바. (현행 마목과 같음)

3. (현행과 같음)

4. 관내 초·중·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의 경우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 감액
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#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시간 이상의 자원활동봉사자와 차상위계층의 개인연습사용료 및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의 30%감액과 관내 초·중·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의 전용사용료 50%감액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재정수입의 감소 발생(안 제10조 제1호 다목, 제2호 라목, 제4호)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임

나. 추계결과 ≍ 1,210,105천원 비용(수입감소) 발생

- 예상되는 비용(수입감소)이 5년동안 1,210,105천원으로 연평균 242,021천원임
- 비용추계 전제

- 1)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차상위계층 및 2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에게 체육시설 사용료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의 30%를 감액(안 제10조 제1호 다목, 제2호 라목) 하고자 하나 현재로서는 자원봉사자 및 차상위계층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자수 통계가 없으므로, 서울시민의 시립체육시설 이용률 및 1인당 체육시설 이용료를 활용하여 비용추계
- 2) 초·중·고 학생운동부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시 전용사용료 50% 감액(안 제10조 4호)은 최근 3개년(16~18년) 시립체육시설 학생운동부 선수 사용 현황(서울시 체육정책과 내부자료)을 활용하여 비용추계
- 3) 사용료 및 수강료는 2018년도 금액으로 동결한다고 가정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○ 총 비용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소계(a)	-242,021	-242,021	-242,021	-242,021	-242,021	-1,210,105
	1) 개인연습사용료 수입	-140	-140	-140	-140	-140	-700
	2)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	-15,641	-15,641	-15,641	-15,641	-15,641	-78,205
	3) 전용사용료 수입	-226,240	-226,240	-226,240	-226,240	-226,240	-1,131,200
세출	소계(b)	-	-	-	-	-	
□ 총 비용(b-a)		-242,021	-242,021	-242,021	-242,021	-242,021	-1,210,105

1) 연간 개인연습 사용료 감면액 : 140,339원

○ 추정식 : [연평균 200시간 초과 자원봉사자 및 차상위계층(170,108명) x 연평균 개인연습 이용률(0.2%)] x 1인당 연평균 개인연습사용료 (1,375원) x 감면율(30%) = 140,339원

구분	개인연습 사용료	개인연습 이용자수	서울시민의 개인연습 이용률	차상위계층수	자원봉사자수 (200시간 초과)
2015	26,957,350원	20,181명	0.2%	166,400명	6,804
2016	29,855,010원	21,583명	0.2%	161,394명	6,545
2017	27,733,920원	19,704명	0.2%	162,978명	6,206
연평균	28,182,093원	20,489명	0.2%	163,590명	6,518

<자료출처 : 서울시 관련부서(체육정책과, 자치행정과, 복지정책과) 내부자료>

주1. 1인당 연평균 개인연습 사용료 = 연평균 개인연습사용료 ÷ 연평균 개인연습 이용자수 = 1,375원

주2. 1인당 연평균 개인연습 이용률 = 연평균 개인연습 이용자수 ÷ 서울시등록인구(9,857,426명, '17년 말 기준) = 0.2%

2) 연간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감면액 : 15,641,226원

○ 추정식 : [연평균 200시간 초과 자원봉사자 및 차상위계층(170,108명) x 연평균 프로그램 이용률(6.4%)] x 1인당 연평균 프로그램 수강료 (4,789원) x 감면율(30%) = 15,641,226원

구 분	프로그램 수강료	프로그램 이용자수	서울시민의 프로그램 이용률	차상위계층수	자원봉사자수 (200시간 초과)
2015	2,131,834,230원	541,133명	5.5%	166,400명	6,804
2016	3,162,276,170원	635,574명	6.5%	161,394명	6,545
2017	3,789,428,090원	720,077명	7.4%	162,978명	6,206
연평균	3,027,846,163원	632,261명	6.4%	163,590명	6,518

<자료출처 : 서울시 관련부서(체육정책과, 자치행정과, 복지정책과) 내부자료>

주1. 1인당 연평균 프로그램 수강료 = 연평균 프로그램 수강료 ÷ 연평균 프로그램 이용자수 = 4,789원

주2. 1인당 연평균 프로그램 이용률 = 연평균 프로그램 이용자수 ÷ 서울시등록인구(9,857,426명, '17년 말 기준) = 6.4%

### 3) 연간 초·중·고 학교운동부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액 : 226,240천원

○ 추정식 : 연평균 학생운동부 경기장 사용료(452,480천원) x 감면율(50%)  
= 226,240천원

구 분	2016	2017	2018	연평균
목동실내빙상장	438,762천원	422,628천원	495,485천원	452,292천원
구의야구공원	70천원	70천원	425천원	188천원

<자료출처 : 서울시 관련부서(체육정책과) 내부자료>

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남승우

예산분석팀장 정한섭

분석관(주무관) 박인근

☎ 02-2180-7934

e-mail : yab0217@seoul.go.kr